

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충청북도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2번지에 둔다.

제 3 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기타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 4 조(운영위탁) 학사 운영은 재단법인충북학사(이하 “운영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 5 조(운영지원) 도지사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운영법인의 책무) ①운영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운영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운영법인은 위탁운영 기간중 학사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운영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운영법인이 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7 조(사업승인 등)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 8 조(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사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운영법인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영법인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운영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법인 이사장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9 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학사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안 안	수 정 안
<p>제 7 조(사업승인 등)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제 7 조(사업승인 등) 운영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